

이 자료는 1월 4일(목) 조간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말씀은 별첨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례브리핑 발표자료

2007. 1. 3(수)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부 차관입니다.
오늘은

1. 새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큰 폭으로 인상
2. '07년 농림 예산 주요특징 및 중점 편성 내역
3. AI 발생 및 방역조치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농 립 부

1

새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큰 폭으로 인상 등

- 먼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 '07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액 인상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림부는 올 한해 추진할 여성농업인 지원책을 '07 여성 농업인 활짝 웃기 프로젝트'라고 이름 짓고, 그 첫 번째 정책으로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평균 37.2%, 최대 59.5%(만 3세의 경우) 인상했음.
- 이는 올해 정부보육료 지원단가가 평균 4.2% 인상되고, 농림부가 지난해까지 정부보육료의 50%수준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 70%수준으로 인상한 데 따른 결과임.

※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 만0세 361천원, 1세 317, 2세 262, 3세 180, 4~5세 162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연령별 월 지원액 인상내역

- 만0세 : ('06)월 17만5천원 → ('07) 25만3천원
- 만1세 : ('06)월 15만4천원 → ('07) 22만2천원
- 만2세 : ('06)월 12만7천원 → ('07) 18만3천원
- 만3세 : ('06)월 7만9천원 → ('07) 12만6천원
- 만4세 : ('06)월 7만9천원 → ('07) 11만3천원
- 만5세(취학유예 만6세아 포함) : ('06)월 15만8천원 → ('07) 16만2천원

- 또한 만6세('00.3.1~'01.2.28출생자)의 어린이가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도 지원대상(3천8백여명)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영유아에게도 지원을 확대했음.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업인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여성농업인이 편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04년부터 지원해 왔음.

- 지원조건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업인이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이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보육비 또는 교육비를 지원함.

□ 농림부는 이와함께 농업인이 보육시설 등에 영유아를 보내지 못할 경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통한 가정육아비용 지원도 지난해보다 평균 37.3%, 최대 59.5%(만3세의 경우) 인상했음.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연령별 월 지원액 인상내역

- 만0세 : ('06)월 8만7천5백원 → ('07) 12만6천원
- 만1세 : ('06)월 7만7천원 → ('07) 11만1천원
- 만2세 : ('06)월 6만3천5백원 → ('07) 9만2천원
- 만3세 : ('06)월 3만9천5백원 → ('07) 6만3천원
- 만4세 : ('06)월 3만9천5백원 → ('07) 7만9천원
- 만5세(취학유예 만6세아 포함) : ('06)월 7만9천원 → ('07) 8만1천원

□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 383억원에 비해 32.6% 인상된 총 508억원에 이르며, 영유아 양육비는 월 3만2천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월 4만6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지원신청서'를 1월중에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읍·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에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여부를 최종 확정함.

○ 지원금 청구는 연 1회 지원신청으로 같음하며, 지원신청이 늦었거나 연도 중에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아동에 대해서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시설이용 실적 등에 따라 올해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함.

□ 이 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대폭 인상으로 농업인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며,

○ “농어촌지역의 경우 보육시설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수준 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농어촌지역에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 1,420개 읍·면중 476개 읍면(33.5%)

○ 한편, 농림부는 '07 여성농업인 활짝 웃기 프로젝트' 후속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첨부자료>

**'07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액**

(단위 : 원)

연령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06(A)	'07(B)	증감액 (B-A)	%	'06(A')	'07(B')	증감액 (B'-A')	%
0세	175,000	253,000	78,000	44.6	87,500	126,000	38,500	44.0
1세	154,000	222,000	68,000	44.2	77,000	111,000	34,000	44.2
2세	127,000	183,000	56,000	44.1	63,500	92,000	28,500	44.9
3세	79,000	126,000	47,000	59.5	39,500	63,000	23,500	59.5
4세	79,000	113,000	34,000	43.0	39,500	57,000	17,500	44.3
5세	158,000	162,000	4,000	2.5	79,000	81,000	2,000	2.5
평균	128,670	176,500	47,830	37.2	64,330	88,330	24,000	37.3
취학유예	-	162,000	162,000	-	-	81,000	81,000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Q&A

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또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 지원액을 신청하는 방법은?

답)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또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통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신청서식은 농림부 홈페이지 (www.maf.go.kr)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 활용)

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면적이 5ha미만으로 만5세 미만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보육시설 등에 다니지 않을 경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지원함

문)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했는데 농어촌지역이란?

- 농어촌지역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 ('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 군 지역,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 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특·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하며, 준농어촌 지역을 포함함

※ 준농어촌지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문) 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부모와 다르거나 대상아동이 도시지역의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양육비 및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대상 아동의 부모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부모와 다르거나 도시지역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더라도 부모중 1인 이상이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문) '07년 3월 취학대상 아동('00.3.1~'01.2.28 출생아)이나 신체 발달 부진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가?

- '00.3.1~'01.2.28 출생아가 신체발달 부진 등으로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는 올해부터 당해연도에 한하여 지원함

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시설인 보육시설 및 유치원이란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어린이집)과 유치원만을 말하며, 사설학원은 제외됨

- 다음은 '07년 농림 예산 주요특징 및 중점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07년도 농림부 소관 총지출(예산일반지출 + 기금일반지출) 규모는 12조 1,208억원으로 '06년보다 2.1%가 증가
 - 예산 일반지출은 7조 7,241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
 - 기금 일반지출은 4조 3,967억원으로 전년대비 3.4% 감소
- 금년도 농림예산은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질향상 5개년계획의 실천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07년 투융자사업비는 8조 4,982억원으로 '06년 대비 4.4%가 증가
 - 쌀소득보전직불 등 직접지불관련 예산 규모는 '06년 대비 7.1%가 증가한 2조 826억원으로 농림예산 대비 직불예산 비중이 '06년 23.6%에서 24.0%로 확대
- 금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농림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을 여건변화에 맞게 보완하여 농업·농촌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2007년 농림예산(기금) 주요특징 및 증점편성내역

1. 2007년 재정지원 규모

□ '07년 농림부 소관 총지출(예산일반지출+기금일반지출) 규모는 12조 1,208억원으로 '06년 보다 2.1% 증가

○ 예산일반지출은 7조 7,241억원으로 '06년 대비 5.5% 증가

○ 기금일반지출은 4조 3,967억원으로 '06년 대비 3.4% 감소

⇒ '07년 재특회계 폐지로 농축산경영자금 예산이 '07년부터 재경부 소관 공자기금 사업으로 전환됨을 감안한 실질적인 총지출 규모는 '06년보다 4.6% 증가

* 농축산경영자금 : ('06) 재특회계 용자(2,828억원) → ('07) 공자기금 용자(2,244)

(단위 : 억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I. 농림부 소관 총지출(A+B) (실질적 총지출 규모)	118,740 (115,912)	121,208 (121,208)	2,468 (5,296)	2.1 (4.6)
○ 농가소득·경영안정	32,775	33,470	695	2.1
○ 농촌개발·복지증진	5,760	10,001	4,241	73.6
○ 농업체질강화	20,149	19,313	△836	△4.1
○ 양곡관리·농산물수급	34,362	34,860	498	1.4
○ 농업생산기반조성	19,797	20,320	523	2.6
○ 농축산경영자금	2,828	-	△2,828	순감
○ 기본적 경비	3,069	3,245	176	5.7
◇ 예산일반지출(A) (실질적인 예산일반지출 규모)	73,203 (70,375)	77,241 (77,241)	4,038 (6,866)	5.5 (9.8)
◇ 기금일반지출(B)	45,537	43,967	△1,570	△3.4
※ 투융자사업비	81,436	84,982	3,546	4.4

2. 2007년 농림예산(기금)의 주요특징

(1)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직불관련 소요를 예산에 반영

- 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07년 투융자 사업비 (예산+기금)는 '06년보다 4.4% 증가
 - 투융자예산 : ('06) 81,436억원 → ('07) 84,982 (증3,546억원)
 - ☞ '07년 농림분야 투융자 확보액(농림부·농진청·산림청, 타부처 농특세사업)은 11.5조원으로 '07년 투융자계획 10.7조원 보다 8천억원 초과확보
- '07년 직불예산 규모는 2조 826억원으로 '06년 1조 9,441억원 보다 1,385억원 증가(증7.1%)
 - 농림예산대비 직불예산비중 : ('06) 23.6% → ('07) 24.0

(2) 타부처 지역개발·복지예산 이관 및 회계통합 반영

-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체계 정비와 관련, 타부처 사업을 농림부 소관으로 이관(증3,957억원)
 - 신활력지원(1,882억원, 행자부), 오지종합개발(1,134억원, 행자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180억원, 건교부, 국민주택기금 전출금), 농어민 연금보험료(761억원, 복지부)
 - * 국민연금공단 운영비('06년 : 280억원)는 농특세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 특별회계·기금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농특세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농특회계내 전입금계정을 농특세사업계정으로 전환

- 재정용자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농축산경영자금 용자예산이 재정부 소관 기금사업으로 전환('06년 : 2,828억원)
- 농축산경영자금은 회계(기금) 정비와 관계없이 일정규모 지속 지원
 - * 운용규모 : ('06) 33,000억원 → ('07) 32,000 (△1,000)

- ◆ 회계정비에 따라 회계구조 단순화 : 6개회계 → 4개회계
 - * '07 회계구조(4개회계) : 일반·농특·균특·양특회계 (농특세·재특은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월)에 따라 재정자주권 강화를 위해 균특회계내에 「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 신설(548억원)
- 농특회계(42억원)→ 균특(제주계정), 기존 균특사업의 계정변경(506억원)

(3) 새로운 농정여건에 부응하는 신규사업 적극발굴

【예산사업 : 9개사업, 211억원】

- 고품질쌀브랜드육성(72억원), 바이오디젤유채생산(18),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19), 도시민농촌유치종합지원(42), 농식품안전정보관리(12), 농촌테마공원조성(16), 농업경영체전문인력 양성지원(3), 국유재산 실태조사(27), 삶의질위원회운영지원(2)

【기금사업 : 8개사업, 797억원】

- 원예브랜드육성(82억원, 농안), 소비자유통시설지원(300, 농안), 과실브랜드육성(22, FTA), 원예작물 수급안정사업(127, 농안), 종자산업육성지원(60, 농안), 전통음식외식산업지원(16, 농안), 자연순환농업활성화(160, 촉발), 브랜드가맹점 판매시설(30, 촉발)

3. '07년 농림예산(기금)의 중점 편성내용

① 농업인 소득안정과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강화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7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쌀값하락에 대비한 변동직불금 소요지원
 - 고정형직불금(농특) : 1,024천ha, ha당 70만원(연간 7,171억원)
 - 변동형직불금(기금) : ('06) 9,096억원→('07) 9,502(증 406억원)
- 조건불리직불의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는 '06년 수준유지(523억원)
- 친환경농업직불은 지원면적(27천ha→43천ha)확대(114억원→175)
- 농작물재해보험은 7개품목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567억원 → 558)
- 원활한 신용보증을 위해 농신보 출연 확대(5,780억원→7,357)
-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확대(422억원→566)

②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 및 지역개발 중점지원

- 농업인건강보험료(1,359억원→1,272)는 대상인원(599천세대→532)감소
-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157억원→268) 및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인력지원사업(227억원→278) 확대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균특)은 56개 계속지구의 연차별 투자소요 및 40개 신규지구 착공소요 지원(467억원→669)
- 정주기반확충 등 생활환경정비(균특) 적극추진(2,160억원→2,152)
 - 정주기반확충 1,921억원/300개면, 전원마을조성 231억원/51개마을
- 녹색농촌체험마을(균특) 조성(67개소→84) 확대(68억원→84)

③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체질강화 적극추진

-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08년까지 시범사업 실시(75억원→165)
 - 사업량 : 계속3·신규6, 개소당 100억원, 2개년사업, 국고 50%
- 자연순환농업과 연계하여 135만톤의 유기질비료 지원(473억원)
- 지역농협의 중대형 농산물판매장 10개소 신규지원(농안 300억원)
- 창업농 및 신규후계농업인의 자금지원 확대(210억원→250)
 - 창업농 1,000명(1인당 63백만원 융자), 후계농 400명(1인당 50백만원 융자)
- 영농규모화사업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4,341억원→3,400)
- 맞춤형 기술·교육 집중실시 및 교육 인프라 확충(122억원→130)

④ 양곡수급안정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 분야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RPC 건조·저장시설(100개소) 증설 및 저온·저장시설(10개소) 설치 확대(249억원→258)
- 양특회계 예산은 공공비축양곡 및 MMA 쌀 매입·방출과 조작관리 등에 필요한 소요반영(12,932억원→12,937)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완공위주로 지원 (3,454억원 → 3,800)
- 방조제 개보수(균특)는 재해위험 방조제 중심으로 내실있게 지원
 - 국가관리방조제 : 340억원→340, 지방관리방조제 : 395억원→395
- 상습침수 농경지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균특)은 준공 지구를 확대하고 신규착수 축소(2,155억원 →2,074)
- 중규모 용수개발은 잔사업비(1조 3천억원) 감안, 계속지구 조기완공 위주로 지원하고 신규착수(5지구→3) 축소(2,436억원 → 2,370)

- 다음은 우리부 주요현안인 AI 발생 및 방역조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북 익산(11. 22/ 11. 27)과 김제(12. 10)에 이어 충남 아산의 씨오리 농장에서 4번째로 AI 발생 확인(12. 11 신고, 12. 21 확진)
 -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km)내 가금류와 감수성 동물의 신속한 살처분을 통해 감염원 제거 조치
 - ※ 익산 57농가 763천 마리, 김제 114농가 358천 마리, 아산 38농가 28천마리
 - 아산 발생 농장의 알을 부화하는 부화장의 오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 부화장 폐쇄 조치
 - 아울러 11. 20일 이후 동 부화장으로부터 오리를 분양해간 전국의 44개 농장의 오리를 예방차원에서 살처분 조치(511천마리)
 - ※ 오리는 감염 증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진단에 상당 시일이 소요
- 역학조사반)을 투입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발생 농장간에 연계성이 밝혀지지 않았음
 -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전국의 270개 농가에 대해 일일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이사항 없음
 - 최초 발생 지역인 익산·김제에서 분리된 바이러스(3건)는 중국 서부 “칭하이”에서 분리된 유전자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됨
 - ※ 분리된 바이러스의 사람전염 가능성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미국 CDC에 분석 의뢰

○ 환경부와 공동으로 주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철새를 포획, 시료를 채취하여 AI 검사 실시 추진중

□ 전국 단위의 AI 방역활동 점검 및 신속신고 유도 조치

□ 익산·김제·아산지역 차단방역 및 살처분 사후관리 강화

□ 닭·오리고기와 계란 가격안정 및 소비회복 노력 강화

- 12.26일부터 김제 수매 실시, 12.31일까지 총 29만마리 수매

※ 닭고기(원/kg) : 11.22일 1,015 → 11.30일(최저) 653 → 12.22일 901 → 12.26일 796

계란(원/10개) : 11.22일 817 → 12.21일(최저) 684 → 12.22일 687 → 12.26일 684

AI 발생 관련 참고자료

('07.1.2현재)

구분	1차	2차	3차	4차
지역	전북 익산	전북 익산	전북 김제	충남 아산
축종	육용종계	육용종계	메추리	씨오리
신고일 (발생일)	11.22	11.27	12.10	12.11
살처분·폐기	57농가 763천마리		114농가 358천마리	38농가 28천마리
분양농장 살처분	-	-	-	9개도 44농가 511천마리 (아람부화장 14천마리 별도)
수매(경계지역)	12.18부터 270천마리 수매		12.28부터 8천마리 수매	미정